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중진공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③ 중진공 통합정보시스템 내에 수혜기업의 지원이력 정보 수집 · 조회 및 활용
-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일, 휴업일, 폐업일, 소득세 원천 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부",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등에 한함
-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 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 표 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